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64
----------	------

2022년 2월 14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21일, 양민규 의원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 1. 제안이유

- 조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 확보가 떨어짐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유능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신설함(제5조제2항~제4항).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064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

- 현대사회는 국가 간 교류와 인구 이동이 빈번해지는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초등학교	422,293	13,067	3.09	409,594	12,938	3.16	397,900	13,093	3.29
중학교	207,413	3,128	1.51	209,809	3,401	1.62	209,081	4,049	1.94
고등학교 (각종)	239,926	1,734	0.72	224,709	1,962	0.87	215,044	2,226	1.04
계	869,632	17,929	2.06	844,112	18,301	2.17	822,025	19,368	2.36

-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모든 학생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나. 정의(안 제2조제1호)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sup>1)</sup>

동 개정조례안 상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해 인식되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sup>2)</sup>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의 예를 살펴보면,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시·도교육청이 사전적 의미 및 사회통념에 따라 조례에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네이버 지식백과

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법제처, 2018)

[표-2] 각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의 다문화교육 정의

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의 내용
경북	-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
광주	-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대구	-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인천	-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전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학생 교육
제주	-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충북	-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조례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는바,<sup>3)</sup>

안 제2조제1호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3)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법제처, 2018)

## 다.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제2항~제4항)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제2항~제4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① 다문화교육 관련 부서라는 용어는 업무 범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②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자문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2022. 1. 28.).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유능한 전문가의 자문위원회 참여도모이며,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현재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15개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개로 동 자문위원회의 경우 국장급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 즉 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sup>4)</sup>,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수는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와 달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소속 부서를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부서로 국한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 확장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정책에 관하여 보다 거시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것은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현황**

연번	위원회	위원 수(명)	당연직
1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21	-
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5	-
3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14	-
4	과학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
5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5	교육정책국장
6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
7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5	-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13	-
9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5	-
10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5	-
11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15	-
12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15	-
13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3	-
14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5	-
15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15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제1항 중 “자문을”을 “자문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u></p> <p>1.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에 <u>해당하는 사람</u></p> <p>2.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에 <u>해당하는 사람</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다문화교육</u>”이란 여러 나라의 <u>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u></p> <p>2. “<u>다문화학생</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u>유아교육법</u>」과 「<u>초·중등교육법</u>」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u>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u></p> <p>가.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에 <u>해당하는 사람</u></p> <p>나.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에 <u>해당하는 사람</u></p> <p>다. <u>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u></p>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국인

<삭 제>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자문에 응하기 -----  
-----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 세부사항-----.